

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0 ~ 16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0. 4. 5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개정이유

○ 종전 「측량법」, 「수로업무법」 및 「지적법」을 통합한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·시행(시행 2009.12.10, 법률 제9774호, 2009.6.9 제정)됨에 따라 거창군 지명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,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, 위원의 임기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세부운영과 관련한 현행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종전 「측량법」에 따라 설치된 지명위원회의 근거 법령이 통합 법률인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목적조항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의 명칭을 변경함(안 제1조).

- 지명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 변경
 - 「측량법」 제58조제4항 →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

나. 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 기능 중 지명의 제정,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외에 군 관할구역의 지명에 대한 조사, 자료수집 및 분석 기능을 추가하고, 지명의 조사내용·조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(안 제2조, 제10조).

-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,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하되, 지명의 생성과 유래,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하며,
- 각급 행정구역 경계간 기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인접 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고,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도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음

다.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함(안 제4조).

-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,
-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음

라.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함(안 제7조).

-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

마. 의견청취,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함(안 제11조).

- 위원회에서 지명의 제정, 변경 또는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-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
-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8조부터 제96조까지

나. 예산조치 : 수요 발생시 필요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라. 그 밖에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사항 없음
- 2) 입법예고(2010. 2. 1. ~ 2010. 2. 21.) 결과 : 특기사항 없음
- 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지명의 제정,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거창군 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명의 제정, 변경 또는 조정
2. 군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, 자료수집 및 분석
3.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.

1. 민원봉사과장, 도시건축과장
2.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남도 지명위원회(이하 “상급 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분과위원회 등)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(간사)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제9조(회의록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3. 토의 및 심의결과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지명의 조사)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,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,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으로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(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)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.

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간 기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)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, 변경 또는 조정을 하거나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2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